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급여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0545호

시행일자 2018. 11. 27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8호(2018.11.27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35호, 2018.10.2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 내용 :

-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(별지 1) : 166품목
- 비급여 품목(별지 2) : 22품목
-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품목(별지 3) : 5품목
- 정액수가 품목(별지 4) : 10품목
- 상한금액 조정 등(별지 5) : 6품목
- 삭제 품목(별지 6) : 17품목
- 제조사 등 변경 품목(별지 7) : 32품목
-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및 상한금액(별지 8) : 106품목
-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(별지 9) : 13품목

나. 시행일 : 2018. 12. 1

\* 별지 1 및 별지 5, 별지 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

- 붙임 : 1.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 
2. 변경대비표 및 별지 각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